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 000호

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 일부 개정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,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,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,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도로시설안전과)로 202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사 유(검토의견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|

나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
(전화 044-201-3930, Fax : 044-201-5592)